

 식품의약품안전처		<h1>보도자료</h1>		
보도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자	2021. 10. 5.(화)	
담당과장	수입검사관리과 이호동 (☎043-719-2201)	담당자	장현철 사무관 (☎043-719-2220)	

식약처,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

- 10월말 2차례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-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」 일부개정고시안을 10월 5일 행정예고하고,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
-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
- 주요 개정내용은 ▲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▲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▲원료수급·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▲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입니다.
- (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)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(잔류물질, 식중독균 등)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습니다.
-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,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*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.

*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은 수입중단 조치

- (부적합 축산물 검사 강화)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*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·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**까지 확대합니다.

* 다만 전반적 변질,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

**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·상태·맛·냄새·색깔·표시·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

- (신속 통관 지원)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(식용란 등)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.

- (정보공개 대상 확대)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,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·품목·해외작업장(제조·가공장)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·규격 신설·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.

- 한편, 식약처는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」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(온-나라 PC 영상회의)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.

- 설명회는 10월 21일, 28일 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(붙임2 참고).

-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 법령·자료> 입법/행정 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2월 3일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붙임> 1. 주요 개정안 내용

2. 온나라 PC 영상회의 참여 방법

- 위해가 확인된 수입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(안 제16조의2 신설)

현 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에 시정 요청 - 결과 제출 기한 부재 - 미조치 시 제재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에 시정 요청 - 3개월 내 결과 제출 - 미조치 또는 미흡한 경우 수입중단 가능

-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 검사 강화(안 제16조제5항)

현 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반적 변질, 이물오염 제품은 현장검사 전량 부적합 -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 제재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반적 변질, 이물오염 제품은 현장검사 전량 부적합 -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 5회 현장검사

- 원료수급·물가조절 긴급 수입 축산물 신속 통관 지원(안 제20조제1항)

현 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입신고 접수 순서대로 진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입신고 접수 순서대로 진행 · 원료수급, 물가조절용 긴급수입 축산물은 정밀(무작위)검사 우선 진행 가능

- 정보 공개대상 확대(안 제20조제3항)

현 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 정밀검사 항목 · 검사 중인 식육의 정보(생산국·품목·해외 작업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 정밀검사 항목 · 검사 중인 식육의 정보(생산국·품목·해외 작업장) · 기준·규격 신설·강화 검사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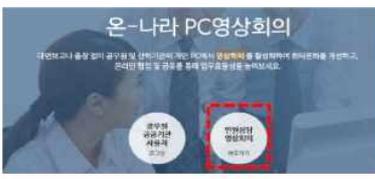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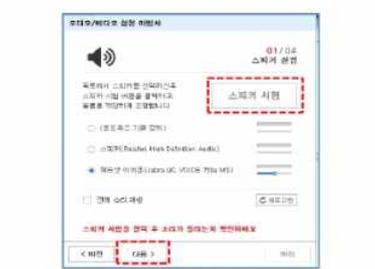
붙임2

온나라 PC 영상회의 참여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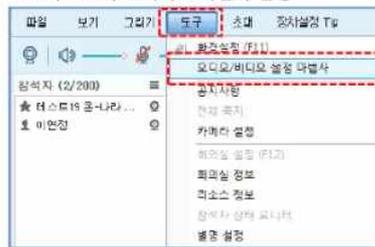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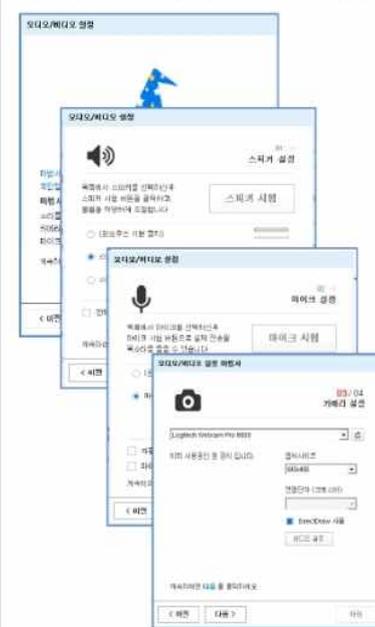
○ 온-나라 PC 영상회의 사이트 접속(vc.on-nara.go.kr)

- '민원 영상회의' 선택 후 대화명(회사명+성명) 및 코드번호 입력

민원상담 영상회의 요약 사용법 1(민원인용)

<p>1-1. 민원상담 영상회의 접속</p> <p>① 민원상담 영상회의 http://vc.on-nara.go.kr 또는, http://mw.on-nara.go.kr 접속 - 민원상담 영상회의 바로가기 클릭 - 본인이름 / 휴대폰으로 받은 코드번호 입력 후 입장버튼 클릭하여 영상회의실 입장</p>  <p>온-나라 PC 영상회의 온-나라 PC 영상회의 접속 화면</p>	<p>1-2. 영상회의의 설치 및 장치확인</p> <p>① 영상회의의 최초 접속 시 설치 화면</p>  <p>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 1. 오디오/비디오 장치 - 클릭! 2.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실행 3. 설치 완료 후 화면의 창 닫기 4. 재입력 및 재시도</p> <p>② 오디오 비디오 설정 마법사 (최초 설치 시) 스피커 장치선택 / 스피커 시험 → [다음]</p> 	<p>1-3. 영상회의의 시작 전 체크 사항</p> <p>③ 오디오 비디오 설정 마법사(최초 설치 시) 마이크 장치선택 / 마이크 시험 → [다음]</p>  <p>④ 오디오 비디오 설정 마법사(최초 설치 시) 카메라 장치선택 → [다음] → [마침]</p> 
---	--	--

민원상담 영상회의 요약 사용법 2(민원인용)

<p>1-4. 영상회의의 개설 화면 #1</p> <p>① 회의실 개설 후 화면</p>  <p>② 잘 들리지 않을 때 장치 설정 확인 - 도구 : 오디오/비디오 마법사 실행</p> 	<p>1-5 영상회의의 개설 화면 #2</p> <p>③ 앞장 1-2-② ③ ④과 같이 장치 다시 확인</p> 	<p>1-6 회의의 참여 및 종료</p> <p>① 좌측 상단의 카메라 아이콘 클릭 후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, 회의 참여</p>  <p>② 상담 종료 후 닫기 버튼 클릭, 종료</p> 
--	---	---

< 개인정보 동의서 및 사전의견 제출 >

- 성명: _____ ■ 핸드폰 번호: _____
- 연락처(E-mail): _____
- 소속(업소명): _____
- 온나라 PC영상회의 참여일자(1개 선택) : 10월 21일(), 10월 28일(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: 동의() 미동의()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관련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」 설명회에 필요한 정보 수집
- 수집하려는 항목: 성명, 연락처(핸드폰, E-mail, fax), 소속(업소명)
- 보유 기간: 1년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명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□ 사전등록 신청서 제출 방법

'21.10.21.(목) 사전등록 신청서는 **10.19.(화)까지** / '21.10.28.(목) 사전등록 신청서는 **10.26.(화)까지**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전자메일(rangz@korea.kr) 또는 웹팩스(0502-604-5935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✓ 영상회의 참여를 위한 코드번호는 휴대폰으로 개별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,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있으시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< 사전 의견 수렴 >

○ 질의 사항

○ 건의 사항